

#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  
1999. 2. 8.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17일
-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17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55회 정기회

-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(1998. 12. 21) 상정
-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(1998. 12. 26) 상정

○ 제157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1999. 2. 4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선웅)

가. 제안 이유

-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

-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
- 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 나. 주요 골자

- 법인격 및 명칭을 정함 (안 2조)
  - 법인격 :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치
  - 명 칭 : 재단법인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
-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(안 5조)
- 조합에서 수행할 사업을 재산의 관리, 신용보증,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,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함 (안 7조)
- 조합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, 건물,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(안 8조)
- 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타용도 사용시 회수토록 규정함 (안 9조)
-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함 (안 10조)
- 매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잔여액은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토록 함 (안 11조)
-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평가 및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(안 13조, 14조)
- 조합 해산시 잔여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토록 함 (안 1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정 노 환)

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바, 조례명, 용어의 재정립, 법인에 대한 의회의 감사 보고자료 요구권, 법인의 정관 제정 개정 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 생 략 ”

### 5. 토 론 요 지: “ 생 략 ”

### 6. 수정 안 요 지 :

#### 가. 수정 이유

- 조합 운영방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례에 명기하고
- 기본재산은 운영비와 구분하여 계정토록하여 출연금의 잠식을 방지하도록 함

#### 나. 수정 주요 골자

-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, 기업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운영토록 함
-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
- 보증방법, 보증제한업종, 보증기관 및 보증료, 위약금, 보증채무이행, 구상권 행사 등을 기재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 운영토록 함

- 신용조사를 기업의 경영상태, 사업전망, 시장여건,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토록 함.
- 신용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함
-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
- 조합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
- 조합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

7. 심 사 결 과: “ 수정 및 가결 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 없 음 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10. 별 첨

- ◎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(안) — 충청북도지사 제출
- ◎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- ◎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(안)